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767 / 전속 731-6369  
 처리부서 : 도로시설과(시청본관 4층) 담당 하상문

문서번호 도관58710- 258  
 시행일자 1994. 4. 16  
 (제 1안)  
 수 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년	
국 장	전 결	
과 장		법무담당관 <b>설사필</b>
계 장		
기안	하 상 문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도관 58700-296호('96.3.22), 교관 58710-243호('96.4.1) 및 교관 58710-278호('96.4.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양화대교(구교)와 관악 도림교(구교)에 대한 교량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차량통제를 위한 차량통행제한 요청이 있어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공고(안)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 양화대교(구교)의 경우 동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청에 협의한 당초  
 공고(안)에 "1,4차선 승용차 전용" 내용이 추가되었음

첨부 차량통행제한공고(안) 및 도면(관악 도림교) 각 1부. 끝.

(제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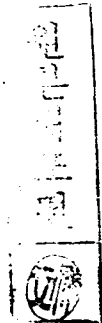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 구분 : 공고
- 나. 게재 건명 : 차량통행제한공고
- 다. 게재 내용 : 별첨
- 라.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첨부 차량통행제한공고(안) 2부. 끝.



## 도 로 관 리 과 장

(제 3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도관 58700-296호('96.3.22), 교관 58710-243호('96.4.1) 및 교관 58710-278호('96.4.10)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와 관악 도림교(구교)에 대한 교량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양화대교(구교)의 경우 1·4차선은 통과높이 2.5m(승용차전용), 2·3차선은 총중량 6톤 이상 차량(노선버스는 제외)으로 제한함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운전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4. 마포구에서는 별첨2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양화대교 본선 및 2개 램프진입로에 단속원을 배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을 단속원에게 교육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악 도림교 차량통행제한에 따른 안내·규제표지판을 설치토록하고 적절한 단속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및 도면(관악 도림교) 각 1부.

2. 교통처리계획도 및 안내표지판 양식 각 1부(마포구). 끝.

## 서울특별시

수신처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로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제 4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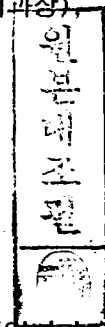
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

참 조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도관 58710-311호('96.4.3) 및 도관 58710-312호('96.4.3)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와 관악 도림교(구교)에 대한 교량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교량 진입로상에 안내·규제 표지판을 조속 설치(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및 도면(관악 도림교)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도관 58700-296호('96.3.22), 교관 58710-243호('96.4.1) 및 교관 58710-278호('96.4.10)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와 관악 도림교(구교)에 대한 교량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및 도면(관악 도림교)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구1-25(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대중교통1과장, 대중교통2과장.

197  
 ( ) 전권

공 고 ( 2 )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6 - 호

**차량통행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996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강북 → 강남 방향)</li> <li>○ 관악 도림교(구교) (신대방역 → 당곡 사거리 방향) ※ 위치: 신대방길 중 도림천 횡단구간</li> </ul>
제한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li> <li>- 1,4차선 : 통과 높이 2.5m 이상 차량(승용차 전용)</li> <li>- 2,3차선 : 총중량 6톤 이상 차량 (단, 노선버스는 제외)</li> <li>○ 관악 도림교(구교)</li> <li>총중량 27톤 초과 차량</li> </ul>	구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li> <li>· 동교량 본선 전 구간 및 진출입램프</li> <li>○ 관악 도림교(구교)</li> <li>· 동교량 전 구간</li> </ul>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1996년 4월26일 00:00부터 삼판전면 개수시까지</li> <li>○ 관악 도림교(구교) 1996년 4월26일 00:00부터 보수공사 완료시까지</li> </ul>		
이 유	<del>동교량의 구조보강 및 차량통행 위험 방지</del> 시공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내리막 유출 등의 현상으로 제1차로 과 보강이 필요하여 관악도림교의 동교량에 대한 구조보강을 실시함.		
기 타 주 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전화: 331-6366-8)		
<p>&lt;위 치 도&gt;</p> <p>생략 【서울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관악 도림교)과 같음】</p>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6 - 호

차량통행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하고자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6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강북 → 강남 방향)</li> <li>○ 관악 도림교(구교) (신대방역 → 당곡 사거리 방향) ※ 위치: 신대방길 중 도림천 횡단 구간</li> </ul>
제한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 1,4차선 : 통과 높이 2.5m 이상 차량(승용차 전용)</li> <li>- 2,3차선 : 총중량 6톤 이상 차량 (단, 노선버스는 제외)</li> <li>○ 관악 도림교(구교) 총중량 27톤 초과 차량</li> </ul>	구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본선 전 구간 및 진·출입램프</li> <li>○ 관악 도림교(구교) 전 구간</li> </ul>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화대교(구교) 1996년 4월26일 00:00부터 상판전면 개수시까지</li> <li>○ 관악 도림교(구교) 1996년 4월26일 00:00부터 보수공사 완료시까지</li> </ul>		
이 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후 및 내하력 부족등의 원인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동교량의 안전확보 및 구조보전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전화 : 731-6366-8)		
<p>&lt;위 치 도&gt; 생략 【서울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관악 도림교)과 같음】</p>			

1/2  
145